

	대학 교육품질 관리(CQI) 규정	문서번호	3-1-35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고 한다.)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) 이 규정에서 정하는 ‘교육품질 관리’ 즉 CQI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)란 대학교육 운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, 개선, 환류해나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.

제3조(대상) 교육품질 관리 대상은 [별표 1]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며, 이 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4조(주관부서 및 위원회) ① 지속적인 교육품질 관리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,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중요 사항을 분석·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및 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.

② 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품질 평가 및 개선 업무의 기획
2. 부서별 평가 및 개선 업무의 취합 및 분석
3. 평가 및 개선 업무의 개선방안 도출
4. 평가 및 개선 결과를 활용한 대학발전계획 수립

③ 자체평가위원회 및 대학발전위원회는 평가 및 개선의 중요사항을 분석·심의하며,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둔다.

제5조(방법 및 절차) ① 기획처에서는 교육품질 평가요소를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발의한다.

② 각 행정부서는 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업무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기획처로 제출한다.

③ 기획처는 각 행정부서의 결과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고, 자체평가위원회는 개선에 대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.

제6조(결과의 심의 및 보고) ① 평가결과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분석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결과의 활용) 지속적 교육품질관리 활동과 위원회 활동으로 평가, 분석, 심의된 결과들은 대학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,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에 환류되도록 한다.

- ①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수정

	대학 교육품질 관리(CQI) 규정	문서번호	3-1-35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기획처

- ② 대학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수정
- ③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
- ④ 연도별 행정부서 및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
- ⑤ 기타 대학 학사운영의 제반 방향설정 및 지침 설정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	대학 교육품질 관리(CQI) 규정	문서번호	3-1-35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기획처

[별표 1] 교육품질 평가·개선을 위한 평가요소

구분	평가종류	평가지기	평가내용	담당부서 및 위원회
내부	대학자체평가	년 1회	증장기 및 특성화계획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평가	성과관리센터, 부서, 자체평가 위원회, 대학발전 위원회
	교원업적평가	년 1회	연구실적, 강의평가, 사회봉사 등 평가표에 따른 항목 평가	교무처, 교원업적평가 위원회
	교육수요자 만족도	년 1회	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만족도 평가	성과관리센터,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
	강의평가	학기별 2회	강의편성, 수업관련 평가, 교수지식수준 등 평가항목 평가	교무처, 교원업적평가 위원회
외부	기관평가인증	인증시점 후 5년	기관평가인증 기준표에 따른 평가요소 평가	기획처, 부서, 자체평가 위원회, 대학발전 위원회
	대학기본역량진단	-	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 따른 6개 항목 평가	기획처, 부서, 자체평가 위원회, 대학발전 위원회
	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평가	인증시점 후 5년	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	교무처, 부서